

2003. 11. 19(수) 10:00

第104回 臨時會제4차본회의

# 郡政質問

최용환 議員

- 반갑습니다. 최용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고사를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 한나라 우 임금은 “장가 든 지 나흘만에 집을 나가 천하의 물을 다스리기 위해 8년 동안 밖에 있으면서 그의 집 문 앞을 3번이나 지나면서도 들리지 않았다.”는 “과문불입”이라는 고사로, 수해를 당한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고사인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국가의 1번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 현장을 무시한 설계, 시공, 공사감독의 부재,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미수립과 공사 설계의 지연, 시공업체의 발주지연, 특별재해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도의 눈치만 보고 우리 군의 입장을 가지지 못 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 한 점 등이 수해복구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입니다.
- 제98회 임시회때 수해 복구와 관련해서 군수가 “밥맛을 잃었다”고 했지만, 본 의원 보기에 기대에 미흡하고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박점용 의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 인근 군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무주군에서는 도에서 무주군으로 전적으로 전권을 위임하여 신속하고도 완벽에 가깝게 처리했으며, 수해복구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능동적

으로 대처하였고, 함양군은 백일작전, 김천시는 재해비상 지역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군수가 진두 지휘하여 조속한 복구를 이루어낸 것으로 모범 사례들로 꼽고 있습니다.

■ 먼저,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작년도에 피해를 당한 주민들은 거창군 전역이 재해특별지역으로 선포되어 공사만 제대로 되면 다시는 수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조속한 복구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올해 우리 주민들은 공사 지연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해를 당하여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사의 종류나 금액에 따라 시행청을 달리함으로 인해 공사 발주가 늦어져 태풍이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더 큰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 도가 시행한 공사와 군에서 시행한 공사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 하천법상 하천의 관리권이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해복구공사는 도에서 한다면 군수가 관리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주민들로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마치 자기집 담장이 무너졌는데 주인은 보고

만 있고 다른 사람이 와서 공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 하천복구 공사를 도에서 시행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공사가 지연되거나 감독관이 근무하는 도청과 우리 군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 공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례가 잦은데, 또 다시 태풍이 안 온다는 보장도 없고, 또, 집중 호우나 태풍 등으로 재해가 발생한다면 도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두 번째로는 현장에 맞는 설계와 시공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민원 예방과 공사의 하자 방지를 위해 공사와 관련된 몽리민 대표나 이용자 대표를 선임하여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 공사 설계 전 주민대표(명예감독관)와 공사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사를 시행한다면 주민의견의 반영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에 대한 하자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 현재 우리 군에서는 공사의 하자 방지와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 대표나 몽리민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 전 설계 반영사항 협의와 준공시 입회, 또는,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제도

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세 번째로 일반직공무원을 공사감독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 수해가 발생하면 한꺼번에 많은 공사를 발주함으로 인하여 설계 인력 부족과 공사감독관 부족으로 실질적인 공사감독이 되지 않아 공사 업자의 양심에만 맡겨야 하는 현실입니다.
- 작년과 금년 태풍으로 공사 현장이 너무 많으니까 토목직 공무원 한 사람이 공사감독관으로 임명된 곳이 60여건 이상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의원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 공사감독으로 임명된 토목직 공무원이 지역별로 분산하여 1~2개면에만 공사감독 대상이 집중되어 있다면 감독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지만, 하천, 농로, 용수로 등 담당분야별로 나누어서 공사감독을 하기 때문에 하천관리 부서에서는 하천만 감독하고, 농로관리 부서에서는 농로만 감독하기 때문에 하천공사와 농로공사가 한 곳에 붙어 있어도 감독관이 달라 따로 따로 감독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 감독관 한 사람이 한 개 면에 가면 하천공사도 감독하고,

용수로와 농로도 감독하고 다 보고 오면 되지, 하천공사 따로, 용수로공사 따로, 농로공사 따로, 감독관이 정말 따로 따로, 그야말로 따로 국밥입니다.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 이와 같이 현장이 12개 읍·면에 분산되어 최소한 하루에 2~3개소를 방문하여야만 공사 감독이 제대로 되는데 공사를 같은 시기에 발주하기 때문에 같은 날 주요 공정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은데 산술적으로도 감독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 예를 들어, 레미콘 타설을 하는 주요공정에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군청에 있는 감독관이 한 곳을 방문하여 감독하는데 최소한 2~3시간은 소요되어야 하는데 한 공사에 주요 공정이 몇 가지는 되는데 공사현장이 세 군데만 되어도 공사 감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 토목직 공무원들의 업무가 공사감독 이것뿐이겠습니까? 수해가 나면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취합하여 결재를 받고 상급기관에 보고도 하고 공사현장에 따른 민원처리와 설계 변경 등 처리할 일이 태산 같은데 언제 가북면에 갔다가 북상면에 갔다가 공사 현장을 다 다닐 수 있겠습니까?
-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공사감독은 못 했다고 보면 되겠습

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설계는 다른 공무원이 할 수도 없고 바쁘지 않을 때는 토목직 공무원이 하고, 바쁠 때는 용역을 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현행대로 시행하고, 공사 감독은 일반직 공무원인 읍·면별 마을 담당공무원을 임명하여 설계서를 검토한 토목직 공무원이, 공사감독으로 임명된 일반직 공무원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감독하라고 감독 방법과 요령을 요약하여 알려 주고 주요공정 시공시 시공업자가 공사감독관에게 연락을 하여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개선할 용의가 없다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공사감독 개선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작년도나 금년도와 같이 일시에 많은 공사장이 발생하여 설계용역을 시행하는데 용역업자로부터 설계도를 납품 받아서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설계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검사하고 확인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믿습니다.
- 설계도 검수를 하는 공무원은 누구이며, 태풍으로 인하여 작년도와 올해 군청건설과 공무원 한 사람이 검수한 설계도는 몇 건이나 되고, 검수 내용은 주로 어떤 사항을 검수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번과 같이 공사 대상이 급수적으로 증가할 때는 군 전체의 토목직공무원을, 설계하는 분야와 감리하는 분야로 나누어서 총체적으로 대응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하여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문화센터 하자보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 오늘 다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하자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 요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하자의 원인은 무엇이며, 하자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은 무엇이며, 하자의 문제점에 대해 용역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자에 대해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